

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7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성별
	전화번호/Fax	전자우편	
	주소		
등록개요	발급번호		
	등록증 발급일		
	재발급 사유		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4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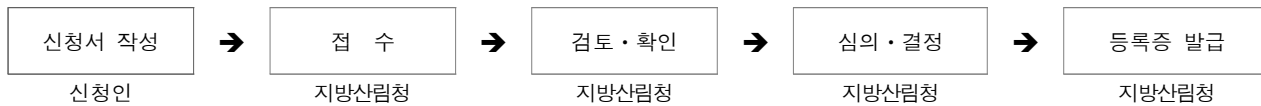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산림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(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) 2.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.5cm × 4.5cm 증명사진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